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3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며, 시민의 구제권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조례와 타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혹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5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4. 9.~4. 29.) 결과: 의견있음(1건)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시·도 조례”를 “시·도 조례 또는 시·군의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를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인단속시스템”을 “단속시스템”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감면”을 “이의신청 절차”로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u>대기환경보전법</u>」(이하 “<u>대기법</u>”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p> <p>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u>대기법</u>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p> <p>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u>대기법</u> 제58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 3. -----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4. ----- ----- ----- 『<u>대기환경보전법</u>』 -----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u>대기법 제46조제3항</u>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p>	<p>-----  <u>「대기환경보전법」</u> -----  -----  -----  -----  -----</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u>저공해엔진 개조·교체</u>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  -----  <u>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u> -----  -----  -----  -----  -----</p>
<p>③ (생략)  <u>&lt;신설&gt;</u></p>	<p>③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u>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u>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u>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u>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u>무인단속시스템</u>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u>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u>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무인단속시스템</u>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u>교부</u>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 ----- ----- <u>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u>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u>----- -----.</p> <p>② ---- <u>단속시스템</u> ----- ----- ----- ----- ----- -- <u>발급</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u>감면</u>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b>【별지 제1호 서식】</b></p>	<p>1. 「<u>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p> <p>2. 「<u>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u>」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p> <p>⑤ ----- ----- <u>이의신청 절차</u> ----- ----- -----.</p> <p><b>【별지 서식】</b></p>

현행					개정안				
일련번호 : <div style="text-align: center;"><b>운행제한 위반 통지서</b></div>					일련번호 : <div style="text-align: center;"><b>운행제한 위반 통지서</b></div>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명		차대번호			차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b>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b>				단속방법	<b>단속시스템 단속, 단속공무원 단속</b>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b>단속되었기</b>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b>발부</b>합니다.</p> <p>※ 처음 1회 <b>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b>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b>증빙자료</b>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b>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장</b></p>					<p>「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b>단속되었기에</b>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b>발급</b>합니다.</p> <p>※ 처음 1회 <b>위반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b>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b>증명서류</b>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b>제출하시기 바랍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장 인</b></p>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x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div>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x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div>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p>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p>	<p>○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근거 조항을 제5조제5항제1호와 동일하게 법체계상 통일되도록 개정 요구</p>	<p>○ 반영 - 운행제한을 근거조항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수정 ※ 개정안 제5조제4항제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p>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법령(조례)에 따른 운행제한간 중복 위반시, 과태료 중복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근거법령 변경(폐지, 제정시행)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이경주(02-2133-4410)